

□ 변경 대비표

로력발생일 : 2022년 06월 10일

신한미국증권투자자산신탁(H)(주식)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b>3영업일</b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	제21조 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b>3영업일</b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	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개시일 전날의 <b>대차대조표</b>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)을 공고·개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원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제28조 (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개시일 전날의 <b>재무상태표</b>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)을 공고·개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원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	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b>대차대조표</b>	제30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b>재무상태표</b>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37조 (보수)	제37조 (보수)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월 <b>대차대조표</b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	제37조 (보수)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월 <b>재무상태표</b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	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 2. 판매연기 또는 판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b>&lt;신설&gt;</b>	제48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 2. 판매연기 또는 판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b>(법 제230조에 따른 판매금 지급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시점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함)</b>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
-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
- 3 운용전문인의 변경 및 운용규요 업데이트
- 4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29조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대상 (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) - 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<b>주책저당채권유류화회사법</b> 또는 <b>한국주책금융공시법</b> 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저당채권단보부채권 또는 주책저당증권은 제외된다. <상항> -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b>주책저당채권유류화회사법</b> 또는 <b>한국주책금융공시법</b> 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저당채권단보부채권 또는 주책저당증권	가. 투자대상 (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) - 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<b>한국주책금융공시법</b> 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저당채권단보부채권 또는 주책저당증권은 제외된다. <현행과 동일> -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b>한국주책금융공시법</b> 에 따라 발행되는 주책저당채권단보부채권 또는 주책저당증권

<p>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	<p>나. 투자제한 (모투자신탁 투자제한) 동일종목투자: 2. &lt;생략&gt; <b>주목적담당증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</b>에 따른 주택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지당증권(「<b>주목적담당증권유동화회사법</b>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법, 「<b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b>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	<p>나. 투자제한 (모투자신탁 투자제한) 동일종목투자: 2. &lt;현행과 동일&gt; &lt;삭제&gt;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지당증권(「<b>삭제</b>」 한국주택금융공사법,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
<p>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2부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/p>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,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대차대조표</b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와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,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재무상태표</b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와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
<p>1.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: 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판매연기 또는 판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&lt;신설&gt;</p>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판매연기 또는 판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b>(법 제230조에 따른 판매금지원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b></p>
<p>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: 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	<p>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<b>22.44%이며 2등급</b>으로 분류됩니다.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<b>21.97%이며 2등급</b>으로 분류됩니다.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 &lt;이하 현행과 같음&gt;</p>
<p>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b>최근원황개선 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</b></p>
<p>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: 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판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판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판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<b>최근원황개선 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 및 2022년 05월 31일)</b></p>
<p>3.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(1) 신한미국증권투자신탁(H)(주식) (2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*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<b>핵심운용역: 박정호</b></p>	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(1) 신한미국증권투자신탁(H)(주식) (2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*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<b>핵심운용역: 김정근 부핵심운용역: 유승우</b>  <b>- 최근원황개선 (기준일: 2022년 05월 31일)</b></p>
<p>4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	<p>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라. 운용자산 규모</p>	<p>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-<b>최근원황개선</b> 라. 운용자산 규모 <b>- 최근원황개선 (기준일: 2022년 05월 31일)</b></p>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자본시장법 및 별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
- 3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자본시장법 및 별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기준가격	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대차대조표</b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b>재무상태표</b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2.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: [요약정보] 투자실적 주이 (연평균수익률)	투자실적 주이(연평균 수익률)	투자실적 주이(연평균 수익률) <b>최근 현황 갱신</b>
3.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: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(1) 신한미국증권투자신탁(H)(주식) (2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*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<b>책임운용역: 박정호</b>	운용전문인력 (1) 신한미국증권투자신탁(H)(주식) (2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* 신한미국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<b>책임운용역: 김철규</b> <b>부책임용운역: 유승운</b>  <b>- 최근 현황 갱신(기준일: 2022년 05월 31일)</b>